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이은주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시 제출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동일 운영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 제출한 화해조서로 갈음하는 한편, 대부계약시 운영자가 별도의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